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7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이상헌・김병욱・김민석

김영주 · 신정훈 · 박재호

윤관석 · 문진석 · 이용빈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01년 6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이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,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.

따라서 이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, 사업권의 사유화,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.

따라서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, 건 정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5조제1항).

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4조제2항).
- 나.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,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본문 중 "대상 운동경기"를 "연간 발행 회차, 대상 운동경기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단체나 개인"을 "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「상법」 상의 주식회사(이하 "수탁 사업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단체 또는 개인(이하 "수탁사업자"라 한다)은"을 "수탁사업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수탁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24조(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 제24조(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 업 등) ① (생 략) 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, 투 ----- 연간 발행 표 방법, 단위 투표 금액,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 회차, 대상 운동경기 -----경기대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----. <u><단서 삭제>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.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 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 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 하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 제25조(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 업의 위탁 등) ① -----업의 위탁 등) ①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 ----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

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 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(이 하 "수탁사업자"라 한다)은 다 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유하고 있는 「상법」 상의 주
식회사(이하 "수탁사업자"라 한
<u>다)</u>
②
<u>수</u> 탁사업자는
1. ~ 3. (현행과 같음)